



장수 수웨이얼 소프트웨어 설계 유한회사 VS 우즈씨엔 등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16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중국 장수성 고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05)苏民三终字第063号
판결 일자	2005년 7월 7일	판결 결과	상소 기각(권리자 패)
원심원고(상소인)	장수 수웨이얼 소프트웨어 설계 유한공사		
원심피고(피상소인)	1. 우즈씨엔, 2. 난징 진링 지아오씨엔 집단 유한공사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부정당경쟁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153조		
영업비밀	<초등학교 현대 과학 교육 심층 연구 실험기구 시리즈> 와 <중학교 현대 과학 교육 심층 연구 실험기구 시리즈>		
키워드 (Keyword)	공지정보(不为公众所知悉), 경제적 이익(权利人带来特殊经济利益), 동일성(相同), 노동관계(劳动关系)		

02 사건 개요

우즈씨엔은 2002년 5월 12일 원심 원고 장수 수웨이얼 소프트웨어 설계 유한공사(이하 '수웨이얼 공사')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월급 인민폐 1,000 위엔을 수령하고 상업비밀 조항에도 서명하였다. 우즈씨엔은 위 계약 만료 후에도 2004년 8월까지 매월 월급 1,000위엔을 수령하였다.

우즈씨엔은 수웨이얼 공사 재직당시 <초등학교 현대 과학 교육 심층 연구 실험기구 시리즈>와 <중학교 현대 과학 교육 심층 연구 실험기구 시리즈>를 구성하였으며, 2004년 8월 열린 산둥성 교육기구 설비 전시회에 전시 되었다. 우즈씨엔은 2004년 9월 6일 산둥 전시회에서 원심 피고 난징 진링 지아오씨엔 집단 유한공사(이하 '진링 공사')의 전시대 내에 앉아서 진링공사와 접촉하였고, 수웨이얼 공사는 우즈씨엔과 진링공사를 상대로 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수웨이얼 공사가 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실험 기구 시리즈는 이미 산동 전회 전에 공지된 실험 기구들이며, 진링공사의 실험 기구 시리즈와 수웨이얼 공사 시리즈가 유사하다는 증명도 없고, 우즈씨앤이 진링공사 전시대 앞에서 물을 마셨다는 사실까지는 밝혀졌으나, 양자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고 실험 기구 구성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받았는지 증명된 것이 없으므로, 수웨이얼 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상소인)



원심 피고(피상소인)

수웨이얼 공사의 위 두 과학 실험 기구 시리즈는 초등학생 중학생에 대한 교육 기구 실제 수요에 맞추고 특정한 목적의 요구에 부응하여 설계한 것이며, 막대한 인력, 물력, 재력을 투입하였기 때문에 상업비밀이다.

수웨이얼 공사가 주장하는 정보는 상업비밀을 구성하지 않는다.

우즈씨앤과 진링공사 간의 노동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며, 원심은 고의적으로 쌍방 상품의 동일성을 부인하고 있다.

우즈씨앤과 진링공사 간에 노동관계 등 어떠한 관계가 없다.

04 판결 요지

수웨이얼 공사는 관련 기구들의 독특한 공업화 설계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며, 1심 증거조사 과정에서 '시리즈 상품의 기술 내용이 사회에 공지된 것임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까지 의사표시하였으므로, 해당 시리즈 상품이 이미 존재하는 기구의 단순할 나열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진링공사 판매의 상품 중에서 초등학교 부분 30항, 중학교 부분 49항이 있어, 수웨이얼 공사의 양 시리즈 상품과 비교해 5항 및 6항이 작고, 수량을 제외하고도 같지 않은 부분이 있다.

수웨이얼 공사 상품은 2004년 9월 산둥 전시회에서 공개 전시되었다. 수웨이얼 공사는 우즈씨앤이 2004년 9월 6일 산둥 전시회에서 진링공사의 전시대 내에 앉았다는 것을 증명하였는데, 이는 우즈씨앤과 진링공사가 2004년 9월 6일 접촉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 그 이전에 양자가 접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더욱이 양자가 어떤 노동관계가 있었는지를 증명할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수웨이얼 공사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05 Key Point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에서 ①공중에 알려지지 않았고, ②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며, ③실용성을 구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④권리자가 비밀보호조치를 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를 영업비밀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하는 영업비밀의 요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① 침해자가 권리자의 영업비밀에 접촉하였는지 여부, ② 피고의 정보와 원고의 정보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 ③ 침해자에게 합접적인 입수경로가 확인되는지 여부의 세 단계 검토를 거친다. 이 역시 한국 법원의 영업비밀 침해여부 판단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본 사건에 있어서, 권리자 수웨이얼 공사가 주장하는 두 시리즈의 과학 실험 기구 세트의 구성이 공중에게 알려진 공지 정보라고 보아서, 영업비밀성을 부정하였고, 진링공사가 수웨이얼 공사의 두 시리즈 과학 실험 기구 세트에 접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